

# 세계지방자치동향

## 지역발전

- 한국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 추진 동향 및 시사점

## 지방행정

- 일본 일본 지자체의 환경기본계획의 현황과 과제: 에다지마(江田島)시를 사례로
- 일본 고령사회 일본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(커뮤니티케어)의 추진 현황

## 지방재정

- 미국 미국 지방재정 회복 기금(State and Local Fiscal Recovery Fund; SLFRF) 동향

# Global Trend

2022. 03.

제32호



---

##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 추진 동향 및 시사점

---

### 아동친화도시 개념의 도입

- 아동친화도시(Child Friendly Cities: CFC)의 개념은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인류 거주 문제에 대한 제2차 유엔정주회의(Habitat II)에서 논의되기 시작
  - 회의에 참석한 각 국가의 대표는 ‘아동의 안녕’이야말로 건강한 도시, 민주적인 사회, 굿 거버넌스의 평가지표가 되어야 하며, 도시의 아동들이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·지방 정부, 지역사회, NGO, 언론, 학계 등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에 대해 결의한 유니세프의 의제를 채택
-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‘유엔아동권리협약(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: CRC)에 명시된 아동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, 마을, 지역사회 또는 모든 지방관리 시스템’을 의미
  -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‘UN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며, 아동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여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’를 말함

###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 요소

- 아동친화도시는 지방정부 주도로 아동권리협약을 완벽히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  -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뿐만 아니라 아동과 아동의 가족, 그리고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두(국가, 지역, 사회, 전문가 등)의 협력을 전제로 함
-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은 곧 아동권리협약을 실행하는 과정으로, 다음과 같이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는 10가지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
  - ① 아동 참여(children’s participation):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
  - ② 아동친화적인 법률체계(a child friendly legal framework):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을 마련
  - ③ 도시 차원의 아동 권리 전략(a city-wide children’s rights strategy):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 권리 전략을 개발

- ④ 아동 권리 단체 또는 조정 기구(a children's rights unit or coordinating mechanism)  
: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
- ⑤ 아동 영향 평가(child impact assessment and evaluation) : 정책과 조례,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
- ⑥ 아동 예산(a children's budget) :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,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
- ⑦ 도시 아동의 정기적인 상태보고(a regular state of the city's children report) :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
- ⑧ 아동의 권리 알림(making children's rights known) : 아동 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림
- ⑨ 아동을 위한 독립적 옹호(independent advocacy for children) :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 인권 기구를 개발
- ⑩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(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지정 요소) :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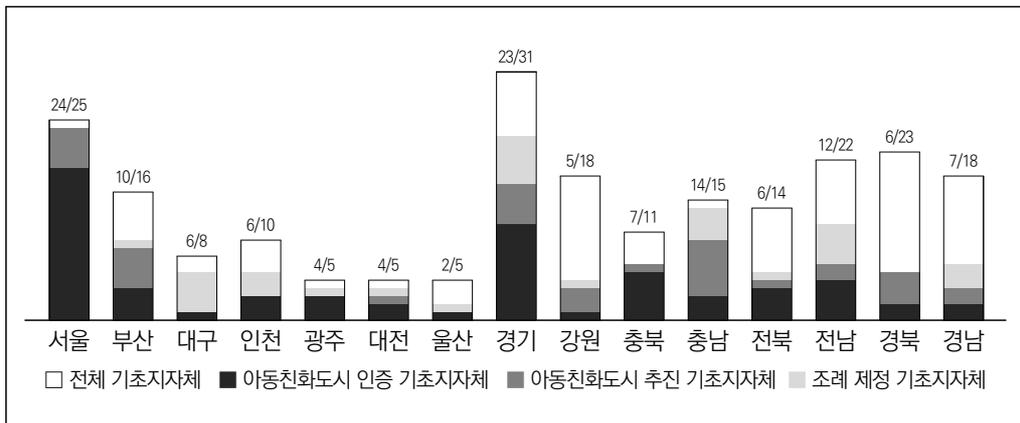
## 아동친화도시의 비전과 5대 목표

-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의 비전을 '모든 아동이 아동기를 행복하게 지내고, 공평한 기회를 통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'으로 제시
- 아동친화도시 비전하에 다음과 같이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목표를 구성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반영하여,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모든 지방정부가 달성해야 할 내용을 포함
  - ① 존중받을 권리,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: "지역의 모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존중받고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한다."
  - ② 의견을 표현할 권리 : "지역의 모든 아동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률과 공공 정책, 예산,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존중받아야 한다."
  - ③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권리 : "지역의 모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, 위생, 영양, 교육서비스, 사법제도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."
  - ④ 안전하게 살 권리 : "지역의 모든 아동이 안전한 물을 마시고,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며, 폭력·학대·착취·방임으로부터 보호받고, 아동을 고려해 설계된 도시에서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어야 한다."

- ⑤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와 놀 권리: “지역의 모든 아동이 가정생활, 문화 및 여가 생활에 참여할 기회, 친구를 만나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 등 여가와 놀이를 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.”

###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추진 현황

- 2022년 3월 현재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총 71개로 전국 243개(광역시 17 + 기초 226) 지방자치단체 대비 29.2%를 차지
  -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41개로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냄
  - 유니세프 인증·추진의 움직임이 없지만,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(34개)까지 포함하면 모두 146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의 비율은 60.1%에 달함



주 :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되었으며, 막대그래프 상단 수치는 '아동친화도시 인증+추진+조례 제정 지자체 수/전체 기초지자체 수'를 의미

출처 :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내부자료; 자치법규정보시스템 [www.elis.go.kr](http://www.elis.go.kr)

| 그림 1 | 시·도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추진 기초지자체 현황(2022년 3월 현재)

| 표 1 | 시·도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추진 지자체 현황(2022년 3월 현재)

| 시·도      | 인증 지자체  | 추진 지자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례 제정 지자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|---|---|
| 서울 (25)  | • 강동구, 강북구, 강서구, 관악구, 광진구, 구로구, 금천구, 노원구, 도봉구, 동대문구, 서대문구, 성동구, 성북구, 송파구, 양천구, 영등포구, 용산구, 은평구, 종로구 (19) | • 강남구, 동작구, 마포구, 서울특별시, 서초구, 중구 (6)     | -   |
| 부산 (11)  | • 금정구, 부산광역시, 부산진구, 사하구, 서구 (5)   | • 남구, 북구, 수영구, 연제구, 영도구 (5)             | • 해운대구 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구 (7)   | • 달서구 (1)   | • 대구광역시 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남구, 달성군, 서구, 수성구, 중구 (5)                |
| 인천 (7)   | • 남동구, 동구, 서구 (3)   | • 인천광역시 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계양구, 미추홀구, 부평구 (3)                      |
| 광주 (5)   | • 광주광역시, 동구, 북구, 서구 (4)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광산구 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전 (5)   | • 서구, 유성구 (2)   | • 대덕구 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대전광역시, 동구 (2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울산 (3)   | • 북구 (1)  | • 울산광역시 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중구 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세종 (1)   | • 세종특별자치시 (1)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
| 경기 (24)  | • 광명시, 군포시, 부천시, 성남시, 수원시, 시흥시, 안산시, 오산시, 용인시, 의왕시, 평택시, 화성시 (1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과천시, 광주시, 양주시, 이천시, 하남시 (5)           | • 경기도, 고양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안성시, 안양시, 의정부시 (7) |
| 강원 (5)   | • 횡성군 (1)   | • 원주시, 춘천시, 홍천군 (3)                     | • 삼척시 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충북 (7)   | • 옥천군, 음성군, 제천시, 증평군, 청주시, 충주시 (6)  | • 진천군 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
| 충남 (14)  | • 논산시, 당진시, 아산시 (3)   | • 공주시, 금산군, 보령시, 부여군, 예산군, 천안시, 홍성군 (7) | • 계룡시, 서산시, 청양군, 태안군 (4)                  |
| 전북 (6)   | • 군산시, 완주군, 익산시, 전주시 (4)  | • 김제시 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부안군 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남 (12)  | • 광양시, 나주시, 순천시, 장흥군, 화순군 (5)   | • 목포시, 여수시 (2)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고흥군, 곡성군, 무안군, 영광군, 해남군 (5)             |
| 경북 (6)   | • 구미시, 영주시 (2)  | • 경주시, 김천시, 칠곡군, 포항시 (4)                | -   |
| 경남 (7)   | • 김해시, 창원시 (2)  | • 고성군, 진주시 (2)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거제시, 밀양시, 통영시 (3)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주 (1)   | -   | • 제주특별자치도 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
| 전국 (146) | (71)  | (4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34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주 : <sup>1</sup> 괄호 안 수치와 밑줄 지자체는 각각 지자체 수와 광역지자체를 의미하며, 시·도별 지자체는 가나다순으로 정렬  
<sup>2</sup> 아동친화도시 인증·추진 지자체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가 모두 제정되어 있으며, 유니세프 인증·추진의 움직임이 없지만,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 수는 34개로 파악

출처 :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내부자료: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.elis.go.kr

- 연도별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, 2013년 서울의 성북구가 처음으로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, 이후 2014년과 2015년에 인증받은 지자체가 없었으나 2016년 전북 완주군, 부산 금정구 등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
- 제1차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상위단계 인증(재인증)이 필요한 지자체는 2018년을 포함한 이전 연도에 인증받은 지자체들로, 2022년 3월 현재 14개 지자체가 재인증을 받음

【 표 2 】 연도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현황(2022년 3월 현재)

| 인증연도  | 인증 지자체 (인증날짜)   | 지자체 수 |
|-------|---|-------|
| 2013년 | • 서울 성북구(11/20)*  | 1     |
| 2016년 | • 전북 완주군(1/8)*, 부산 금정구(9/23)*, 전북 군산시(10/10)*, 서울 도봉구(11/11)*, 서울 송파구(12/22)*   | 5     |
| 2017년 | • 서울 강동구(3/22)*, 경기 오산시(5/31)*, 전북 전주시(6/26)*, 충북 충주시(8/7)*, 서울 종로구(8/11), 광주 서구(8/17), 경기 수원시(9/4), 세종특별자치시(9/19)*, 대전 유성구(10/31)*, 인천 서구(11/07)*, 충남 아산시(11/14), 서울 강서구(12/11), 경북 영주시(12/22)   | 13    |
| 2018년 | • 전남 광양시(1/11)*, 서울 노원구(2/5), 전남 순천시(2/7), 서울 성동구(2/13), 경기 광명시(3/9), 서울 광진구(3/21), 충남 당진시(3/27), 충북 음성군(4/12), 서울 서대문구(5/28), 경기 화성시(6/26), 인천 동구(8/8), 서울 강북구(9/18)   | 12    |
| 2019년 | • 경기 시흥시(4/15), 광주 동구(4/29), 부산광역시(5/2), 서울 양천구(5/29), 서울 금천구(7/9), 경북 구미시(7/25), 서울 구로구(8/21), 충남 논산시(9/25), 경기 부천시(12/23), 광주광역시(12/28)   | 10    |
| 2020년 | • 경기 용인시(1/13), 강원 횡성군(2/18), 서울 관악구(3/9), 충북 제천시(7/1), 충북 옥천군(10/25), 전남 장흥군(10/19), 전남 화순군(12/11), 서울 은평구(12/14), 서울 동대문구(12/29)  | 9     |
| 2021년 | • 경남 김해시(2/1), 대전 서구(4/22), 대구 달서구(6/10), 전북 익산시(6/17), 부산 서구(8/19), 부산 사하구(8/23), 경기 성남시(8/30), 충북 증평군(9/07), 경기 의왕시(11/9), 인천 남동구(11/16), 서울 용산구(12/14), 전남 나주시(12/15), 충북 청주시(12/16), 서울 영등포구(12/17), 울산 북구(12/21), 부산 부산진구(12/28), 경기 평택시(12/28), 경남 창원시(12/28) | 18    |
| 2022년 | • 광주 북구(2/8), 경기 군포시(2/22), 경기 안산시(3/3)   | 3     |

주 : <sup>1</sup> 괄호 안 수치는 인증월일을 의미하며, 연도별 지자체는 인증날짜 순으로 정렬

<sup>2</sup>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상위단계 인증(재인증)이 필요한 지자체는 2018년을 포함한 이전 연도에 인증받은 지자체들로, 2022년 3월 현재 14개 지자체가 재인증을 받았으며 해당 지자체에 별표(\*)로 표시

출처 :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내부자료

##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

- 아동이 태어나서 자라고 삶의 행복을 누리는 공간이 지방자치단체이므로,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하는 모습은 고무적인 일로 판단
  -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동이 신체적·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한 공간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은, 지역사회와 기성세대의 책무라 할 수 있음
  - 지자체 차원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추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, 아동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건강하고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은 아동이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해당
  - 아동 권리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평가,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조직의 구성,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개발, 예산의 기획·집행 과정에서의 아동 참여 활성화 등이 사업의 목적에 포함될 수 있음
- 아동친화도시가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공간을 의미하므로,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아동친화적인 도시계획이 필요
  - 아동의 의견이 도시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전문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, 아동친화적 도시계획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
- 이제는 가족과 육아를 고려한 도시계획을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,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강화하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실제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
  - 아동친화적인 도시계획은 아동의 눈높이에서 참여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아동 전문가의 협조가 필수적이며, 이와 관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이 되는 학교의 협업과 행정가의 지원이 필요

---

## 김도형

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 부연구위원)